



LPG안전공급계약제 위반행위자 행정처분기준

산업자원부공고 제2002 - 44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8조, 동법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3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에 새로이 도입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자에 대한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을 정하여 전국적으로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공고는 규칙 별표 17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1)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 규칙 별표 17 제2호마목(1)의 규정을 위반하여 용기에 상호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4. 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3)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계약을 체결한 자

제3조(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제2조 각호의 위반행위의 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다음 표와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수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4회
1개항목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2개항목	사업정지 또는 제한 4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5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	허가취소
3개항목 이상	사업정지 또는 제한 6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40일	허가취소
비 고 1. 3개항목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1개항목은 개선하고 2개항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2개항목의 2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2.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은 규칙 별표 1의3 제1호에 의한다.				

제4조(과징금의 산정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갈음하여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정지 또는 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	가스공급자의 연간매출액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7억원 이하
	3만원	5만원	7만원	9만원
비 고 1. 과징금산정기준의 일반기준은 규칙 별표 1의4 제1호에 의한다. 2. 연간매출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가스공급자에 대한 과징금은 규칙 별표 1의4 제2호가목에 의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용기상호표시 등의 위반행위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제3호의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